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666호
- 발 의 자 : 서윤기 의원(찬성자 42명)
- 발의일자 : 2020년 7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73조제1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5.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구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등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73조(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) 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<u>부과·징수하는</u>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 ②·③ (생략)	제73조(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 등</u>) ①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</u>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1)에 따라 인권주류화,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,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2)를 도입·운영하고 있음3).
-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(조례631, 규칙229)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,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(조례 57, 규칙5)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.

1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2) 인권영향평가(HRIA) :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
법령, 계획, 정책,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
3)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(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, '19.4.)

-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자치법규 중 과태료 부과·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고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항⁴⁾이 포함되어 있으나,

현행 부과·징수 관련 내용만 포함된 조례에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,

동 조례 안 제73조 역시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다만,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음.

또한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는 ‘이의제기’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하더라도 ‘이의신청’을 ‘이의제기’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

〈수 정 의 견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<u>부과·징수하는</u>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등)</p> <p>①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등)</p> <p>①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- 이와 같이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「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」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.